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04
----------	-------

발의연월일 : 2026. 4. 17.

발 의 자 : 전진숙 · 허종식 · 김정호  
김남희 · 이인영 · 이수진  
오세희 · 김선민 · 이정문  
정춘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 하위 70%인 사람에 한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음.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인 빈곤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또한,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을 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 형평성 문제로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됨.

이에 거주요건을 추가하고, 어르신에게 보다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자 부부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하되, 감액 비율을 2027년에는 15%, 2029년에는 10%, 2030년부터는 0%로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후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기초연금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기초연금액(제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기초연금액”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연금액의 감액에 관한 특례)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7년과 2029년에는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감액한다.

1. 2027년: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2. 2029년: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②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u>&lt;신설&gt;</u></p> <p style="padding-left: 20px;">③·④ (생략)</p> <p>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①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p> <p>② 소득인정액과 제5조, 제5조의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기초연금액(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p>	<p>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19세 이후 국내에 10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u>&lt;삭제&gt;</u></p> <p>② ----- ----- ---기초연금액----- ----- ----- ----- ----- ----- -----</p>

감액할 수 있다.

③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기초연금액(제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제5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준연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의2의 적용을 받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④ (생략)

--.

③ -----  
-----  
-----기초  
연금액-----

④ (현행과 같음)